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의·시설) 공고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의·시설)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총176명

직 급	직 렌	직 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인원)
7급	수의	수의	40	충청남도 20, 천안시 1, 공주시 1, 보령시 3, 아산시 2, 서산시 2, 논산시 2, 당진시 2, 청양군 1, 홍성군 2, 예산군 2, 태안군 2
9급	시설	일반토목	97	충청남도 10, 천안시 6, 보령시 10, 아산시 3, 서산시 9, 논산시 8, 계룡시 4, 당진시 5, 금산군 5, 부여군 7, 서천군 7, 청양군 5, 홍성군 5, 예산군 8, 태안군 5
		건축	39	충청남도 3, 공주시 2, 보령시 3, 아산시 3, 서산시 9, 논산시 3, 계룡시 1, 당진시 3, 부여군 3, 서천군 2, 홍성군 2, 태안군 5

- ※ 임용예정기관별로 필기시험 시행 여부가 상이하므로, 세부 내용은 공고문 2p 참조하여 확인
- ※ 임용예정기관별로 구분 모집하며, 임용예정기관 응시자 간 경쟁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함

나. 시험과목

직 급	직 렌	직 류	과목수	시험 과목
9급	시설	일반토목	3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모든 과목은 충청남도 자체 출제로, 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 (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필기시험 시행 여부>

필기 면제 (서류전형 + 면접시험)	필기 시행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수의) 전 지역 (일반토목)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건축) 전 지역	(일반토목) 충청남도, 천안

※ 필기시험 면제 지역의 응시자는 서류전형부터 진행하게 되며, 서류제출 등의 세부 시험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3.14.)와 함께 공고됨

- 필기 시험 시간

시험 구분	직급 및 직렬	과 목 수	시 험 시 간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일반토목)	3과목	10:00 ~ 11:00 (60분)

나. 서류전형

- 응시자격 등 기준 적합 여부 서면 심사
- 응시자를 대상으로 인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정함

□ 서류전형 심사평정 기준(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경우)

1. 자기소개서
 2. 관련 자격증 및 근무 경력 등
- ※ 세부 기준은 서류제출 안내 시 공고

- 제출 서류 목록 및 제출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제출 서류로 자격요건을 조회하며, 결과에 따라 제3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 분야와 관련된 주제 발표, 토론을 병행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험 방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3. 응 시 자 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나. 성 별 :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거 주 지 : 제한없음(전국단위 모집)

라. 응시자격

- 자격(면허)증 요건 : 아래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

직 급	직 렬	직 류	제한 내용
7급	수의	수의	수의사 자격증
9급	시설	일반 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경력 요건 : 아래 경력을 만족하는 자

구 분	제한 내용
필기시험 면제	기사이상 : 경력요건 불필요 산업기사 :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 경력 2년 이상(국가유산수리기술자 포함) 기능사 :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 경력 4년 이상
필기시험 시행	기사이상 : 경력요건 불필요 산업기사 : 경력요건 불필요 기능사 :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 경력 2년 이상

※ 관련 경력의 범위에 학위취득 과정, 일반 사병 근무 경력 등은 포함되지 않음

- 해당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 조건과 경력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경력 인정 기준은 해당 자격증 취득 이후임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예시 : 4년간 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 x (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위 자격 조건은 서류전형에서 심사
- 해당 자격·경력을 보유한 사람 및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인 사람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자격증과 경력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하고,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마.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추가면접을 실시할 경우에도 당해 시험의 최초 면접시험 최종일로 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접수 : 2025. 2. 17.(월) ~ 2. 20.(목) <취소 : 2. 17.(월) ~ 2. 21.(금) ※ 필기시험 면제 응시자도 동일 기간에 접수	필기시험	2. 26.(수)	3. 8.(토)	3. 14.(금)
	서류전형	서류 제출 기간 3.14.(금) 10:00 ~ 3.18.(화) 18:00		3. 27.(목)
	면접시험	3. 27.(목)	4. 8.(화) ~ 4. 11.(금)	4. 22.(화)

※ 상기 일정은 시험 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접수 시작일 09:00 부터 접수 마감일 18:00 종료(기간 중 24시간 접수)**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7급) 7,000원, (9급) 5,000원

※ 이외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 수수료) 소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란 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인 자를 의미

다. 응시원서 사진

1) 사진파일 규격 : 파일형식 JPG, 크기 3.5cm x 4.5cm, 해상도 100DPI 이상

2)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 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을 보유한 사진으로 등록

3) 필기시험 면제 대상 지역 응시자는 접수 시 응시원서에 사진을 등록하지 않음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응시지역(道,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복수) 접수할 수 없음
-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3)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임용예정기관별로 경쟁하여 선발
- 4)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하는 사람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
- 5)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
- 6)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에게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 편의지원 증빙서류는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 7)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8)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각종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 9)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에 문의

6. 가 산 특 전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점수에만 포함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 참고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나. 가산특전 등록기간 : 필기시험일부터 등록 가능 ※ 기간 외 등록 불가

- 1) 등록기간 : 3. 8.(토) ~ 3. 10.(월)
※ 필기시험일 전일(3.7.)까지 유효하게 취득하고, 가산점 등록기간에 지자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등록한 경우에 한함
- 2) 등록시간 : 기간 내 24시간 접수
- 3) 등록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증서) 번호 등
※ 가산특전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며, 가산특전 등록기간에 등록한 경우에 한함)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점 비율을 가산
- 2) 가산점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3)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4) 취업지원대상자가 “라”항의 의사상자 가산점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라.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며, 가산특전 등록기간에 등록한 경우에 한함)

-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의상자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점 비율을 가산
- 2) 가산점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3)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4)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다”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

 **의사상자 등 가산점 해당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마.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 1)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산특전 입력기간 중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
※ 필기시험 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 없음
- 2) 가산 종류, 비율, 번호 등 가산특전에 관한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3) 가산특전 등록기간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등록

7.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가. 합격인원 :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120% 선발

※ 선발 예정인원이 7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 8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인원을 범위로 함

나.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가산점을 포함하여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지 및 장소 공고 등에 기재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마.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검은색 사인펜, 수정 테이프를 지참

※ 신분증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 포함), 국가보훈등록증 등

※ 수정테이프 이외에 수정액, 수정스티커를 사용한 경우 당해 문항은 무효 처리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모든 통신장비(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소지가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 시작 전 시험실 전면에서 제출

※ 통신장비 등을 시험실 전면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 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

사.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아.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함.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하므로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하지 않도록 유의

자. 필기시험 장소는 응시자가 지원한 임용예정기관에 소재한 학교가 아닐 수 있으며, 원서접수 인원 및 시험장 여건 등에 따라 본인이 지원하지 않은 시군 소재 시험장에 배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또는 그 밖의 임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타.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파.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필기시험 성적 조화는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하.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시험안내(시험공고)」에 공고되므로 시험 단계별 공고문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본 공고문은 지방자치단체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충청남도홈페이지(chu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 ☞ 시험 관련 사항 : 충남도청 인사담당관 고시팀 (☎ 041-635-3535)
- ☞ 원서접수 관련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1522-0660)
- ☞ 취업지원대상자 확인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 의사상자 확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